

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01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
- 나.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 7일부터 6차에 걸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 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
 - 소재지 : 은평구 통일로 684(녹번동 5)
 - 시설규모 : 연면적 1,857.15 m^2 (지상1층~3층)
 - 개관일 : 2002. 3. 28.
 - 수탁자 :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
 - 위탁기간 : 2014. 8. 7.~2017. 9. 24.(6차)
 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9.25. ~ 2020.9.24.)
- 위탁업무
 -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
 - 교육사업(노동인권, 노동법, 성인지 등)
 -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
 -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소요예산('18년) : 120,000천원(시설 관리비)
 - ※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라.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

- '00.10.05.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(시장면담)
- '01.08.07. 건물임대차계약 체결(중구 장충동 132 483.6 m^2)
- '02.03.21.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(고용68100-413)
- '02.03.28. 근로자복지관 개관(중구 장충동 132 483.6 m^2)
- '02.08.07.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(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)
- '05.08.07.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(중구 예관동 70-27, 747 m^2)
- '08.08.07.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(서대문구 충정로2가 78, 1,200 m^2)
- '12.02.22.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(은평구 녹번동 5 18동, 1,857.15 m^2)

○ 위탁계약(재계약)체결 현황

- 민간위탁계약 1차 : `02.08.07 ~ `04.08.06(2년)
- 민간위탁계약 2차 : `04.08.07 ~ `05.08.06(1년)
- 민간위탁계약 3차 : `05.08.07 ~ `08.08.06(3년)
- 민간위탁계약 4차 : `08.08.07 ~ `11.08.06(3년)
- 민간위탁계약 5차 : `11.08.07 ~ `14.08.06(3년)
- 민간위탁계약 6차 : `14.08.07 ~ `17.09.24(3년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
-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, 조직 인프라 확보, 노동상담,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11조(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)

-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설치운영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 서울특별시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| 명 칭 | 기 능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| 근로자 복지증진 |
|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| 근로자 복지증진 |
| 서울노동권익센터 |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|

제6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김민하 (☎ 2133-5426)

민간위탁 성과보고서(강북근로자복지관)

□ 민간위탁사업 개요

- 추진근거 :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
- 사업내용 :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 및 복지관 시설유지관리
- 추진경과
 - `00.10.05.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(시장면담)
 - `01.08.07. 건물임대차계약 체결(중구 장충동 132 483.6 m^2)
 - `02.03.21.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(고용68100-413)
 - `02.03.28. 근로자복지관 개관(중구 장충동 132 483.6 m^2)
 - `02.08.07.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(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)
 - `05.08.07.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(중구 예관동 70-27, 747 m^2)
 - `08.08.07.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(서대문구 충정로2가 78, 1,200 m^2)
 - `12.02.22.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(은평구 녹번동 5 18동, 1,857.15 m^2)
 - 위탁계약(재계약)체결 현황
 - 민간위탁계약 1차 : `02.08.07 ~ `04.08.06(2년)
 - 민간위탁계약 2차 : `04.08.07 ~ `05.08.06(1년)
 - 민간위탁계약 3차 : `05.08.07 ~ `08.08.06(3년)
 - 민간위탁계약 4차 : `08.08.07 ~ `11.08.06(3년)
 - 민간위탁계약 5차 : `11.08.07 ~ `14.08.06(3년)
 - 민간위탁계약 6차 : `14.08.07 ~ `17.09.24(3년)

○ 사업현황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
- 소재지 : 은평구 통일로 684(녹번동 5)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857.15 m^2 (지상1층~3층)

| 구분 | 연면적 | 사무실 | 노동법률센터 | 회의실 | 휴게실/창고 | 기타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면적(m^2) | 1,857.15 | 791.96 | 59.4 | 233.8 | 66.64 | 805.92 |

- 개관일 : 2002. 3. 28.
- 수탁자 :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
- 위탁기간 : 2014. 8. 7.~2017. 9. 24.(6차)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

□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

○ 추진실적

| 사업명 | 세부항목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 업 | 노동 법률 상담 | ○ 전화상담 : 8,560건 ○ 내방상담 : 1,558건 ○ 인터넷 상담 : 1,101건 |
| | 법률 지원 | ○ 노동부사건(진정·고소 등) : 대리 195건 , 대행 92건 ○ 노동위원회사건(구제신청 등) : 대리 241건, 대행 113건 ○ 근로복지공단사건(산재신청 등) : 대리 56건, 대행 26건 ○ 법원 사건(소송, 각종 신청) : 대행 109건 ○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: 152건 |
| 노동교육 사 업 | 노동법 교육 | ○ 노동자 법률학교 : 총28회, 연인원 1,522여명 참석 ○ 청년학생노동인권교육 : 총70회, 연인원 2,235명 참석 ○ 서울본부 법률학교 : 6회 405명 참석 ○ 주요 이슈별·시기별 노동법교육 ○ 외부교육 강사 참여 : 총 301회 |
| | 기 타 | ○ 노동자 법률지원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습노무사 교육 「노동자의 벗」 매년 진행 신규노무사 138명 참여 |
| 법·제도 개선사업 | 노동행정 사 업 | ○ 노동행정감시 : 노동사무소,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사건처리 실태 분석 ○ 지노위사업위원회 : 서울지노위 구제신청 및 조정사건 현황파악 및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 |
| 복지후생 증진사업 | 각종 행사 | ○ 5.1 노동절,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캠페인, 노동자 등반대회, 서울지역노동자가을체육대회 개최 등 |
| | 기획사업 | ○ 매년 차별철폐 한마당 개최 연인원 2,010명 참여 ○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거리캠페인 실시(2016) ○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: 서울셔틀버스노동자, 서울가락시장 노동자 ○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권리 바로알기 거리캠페인 및 거리 상담 진행 ○ 학교비정규직, 지자체비정규노동자, 등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실태 조사 사업 및 상담 진행 |

○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천원)

| 사업명 | 2014년 | | 2015년 | | 2016년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| 예산액 | 집행액 | 예산액 | 집행액 | 예산액 | 집행액 |
|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비 | 120,000 | 114,637 | 120,000 | 91,622 | 120,000 | 61,232 |

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○ 성과평가 결과 요약

-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는 인근지역을 벗어나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필요
- 노조원 뿐만 아니라 식당, 청소, 알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인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

○ 개선계획

-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와의 연계, 서울지역 법률지원사업 시스템 완성 등
-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대변사업 집중 시행
- 계층과 내용의 차별성에 입각한 다양한 근로자 교육사업 전개